㈜GS ESG 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규정에서 정한 ESG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역할)

위원회는 이사회의 독립적 기능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고, 회사의 ESG에 관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심의, 결의하고, 관련된 사항을 결정한다.

제3조(구성 및 임기)

① 위원회는 독립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 위원과 부의 안건 간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특정 위원의 참여가 적절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사안의 경우, 위원회는 해당 안건 검토 내지 심의·의결 시 특정 위원을 제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
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안 중 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위원회를 독립이사로만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위원회 위원이 아닌 독립이사를 임시적으로 충원하여 진행할 수 있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)

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. 다만, 위원회에서 별도로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 간의 호선으로 위원 중 그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

제5조(소집)

①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아닌 다른 위원은 위원장에게 위원회 회의 소집사유를 밝히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의 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이사회가 대주주(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, 동일인이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회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)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 등 위원회에 부의하여 검토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. 위원회의 최초 소집 이후 운영 빈도는 각 거래 별 특성에 맞게 진행한다.

④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이 일시, 장소 및 목적사항을 회일 [3]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. 그러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6조(권한 및 결의사항 등)

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결의한다.

1. ESG 방향 설정
2. ESG 관련 규범/정책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3. 기타 ESG와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안건을 검토하고,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사회에 바람직한 방안을 권고 또는 제안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위임한 거래에 대해, 거래 목적의 정당성 및 거래 조건의 타당성, 이해상충 유무,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, 검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
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,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위한 재무·법률 자문사 선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,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, 차기 이사회에 부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.

1. 기업지배구조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
2. ESG 대외평가 대응 결과
3. 그룹 친환경협의체 등 ESG 이행 현황
4. 기타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ESG 관련 사항

제7조(결의 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8조(관계인 출석)

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진 및 관계직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9조(의사록)

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간사)

① 위원회 추천을 통해 위원회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각 위원을 보좌하고 위원회 및 산하 연구회 사무전반을 처리한다.

제11조 (경비)

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2조 (규정의 개정)

①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②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 시 이사회 결의로 별도 세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6년 3월 26일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

제3조 제1항 본문, 제2항에서 독립이사 명칭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